

■ 판례 동향

다국적기업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
과세관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례

■ 품목분류 동향

제8401호[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non-irradiated)
원자로용 연료 요소
(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개정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근 수출 호조세 지속 위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要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8월 5일(통권 제2094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최근 수출 호조세 지속 위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要

06 Weekly News**14 전문가 칼럼****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행정안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한·ASEAN FTA 수출자 신고란 작성 방법
- 27** 질의응답사례
커스타드 타르트의 품목분류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다국적기업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 과세관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례

품목분류동향

- 43** 품목분류해설
제8401호[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non-irradiated)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56 세번 바로잡기

낙시의 미끼

57 상식 밖의 상품학

인공태양 발전 시대

최신개정법령**60 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63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9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74 공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78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최근 수출 호조세 지속 위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필요

단기간 대응 어려운 구조적 요인 존재 ... 영향 최소화로 수출 부담작용 줄여야

한국 무역협회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하락, 통화긴축 완화,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이 하반기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진출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하반기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응답이 28.6%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9.5%) 보다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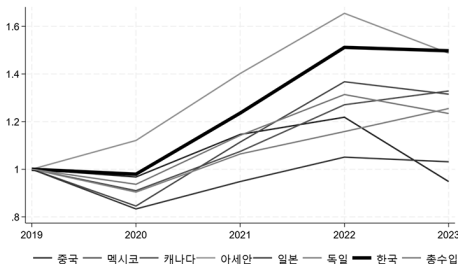
이같이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산업연구원은 아직 우리 수출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수출 호조세 속 무역 파트너 관계 변화 중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수출 증가율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작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문의 회복세에 더해 자동차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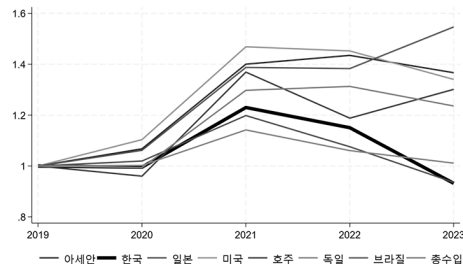
특히 상반기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중국을 추월했다. 상반기 對미국 무역수지는 28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對중국의 54억 달러 적자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했다.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추이 (2019=1)



자료 출처 : 산업연구원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추이 (2019=1)



상반기 수출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출단가가 개선되고 對미국 수출 호조세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작년 대비 9.0% 증가하며 작년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중으로 보고서는 “최근 한국 수출에서 다양한 소비재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류의 확산으로 화장품과 라면 등의 기호성 소비재 수출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총수출 증가율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수출부담으로 작용할 구조적 요인 여전히 존재

산업연구원은 우리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리스크 요인으로 ▲특정 수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집중도, ▲對중국 수출의 지속적 둔화 가능성,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 ▲교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국의 무역제재 강화 가능성을 꼽았다.

상반기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합산하면 34.2%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약 40%에 달해, 한국은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만일 반도체 사이클이 후퇴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위축된다면,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제조’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은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친 영향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됐으며, 자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목적별로 보면,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현지에서 해결하는 법인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제조업의 해외로의 생산거점 이동은 국내 중간재 수출을 일부 대체해 우리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 강도 높은 자국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되는데, 트럼프가 제시한 통상 부문 주요 공약 중 10% 보편 관세의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등은 한국의 對미국 수출 호조세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 리스크 요인의 영향 최소화하는 대내외적 수출 전략 수립 중요

보고서는 수출 리스크 요인 중 일부는 구조적 요인의 성격이 강한 편으로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 등은 구조적 요인에 해당돼 단기간에 이를 개선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과제라며,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로서 향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교역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출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무역 강화 등 불확실한 세계 교역 환경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입법예고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특성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규정은 2026년 1월 24일 시행된다.

디지털의료제품에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융합의약품’,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디지털의료기기 제외)’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등급 기준, ▲허가·품질관리 등 규제 설계, ▲임상시험 등 합리적 규제 마련,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 및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디지털융합의약품 시설기준 및 허가 요건,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영향평가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등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시 소프트웨어의 검증, 유효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 사용적합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 다양한 허가·평가 체계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임상시험기관의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의 버전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일반인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 등 전문매체에 한 광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대상으로만 판매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과 융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시험에 대한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주도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 192개국서 시행

관세청은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7월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열린 세계관세기구(WCO)·만국우편연합(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 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는 국제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각국 관세당국의 우편물 통관에 활용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빈번히 거래되는데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이 급격히 늘어나며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돼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 기간 절반으로 단축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한 단백질 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국산 수출용 혈장분획제제의 출하승인 기간을 단축한다고 7월 31일 전했다.

혈장분획제제는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해 분획, 분리, 정제 등 제조를 거쳐 얻은 단백질 의약품으로 면역글로불린 제제, 알부민 제제 등이 있다. 백신이나 혈장분획제제 등의 경우 국가가 직접 수행한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가 제출한 제조 시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면, 품질평가 전담인력을 활용해 기존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10일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최근 2~3년간 ▲제품별 국가출하승인 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결과, ▲국내 외 품질 관련 안전성 정보, ▲허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해 위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바이오회의약품협회가 올해 2월 발간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KEY DATA 2024’에 따르면, 2022년 바이오의약품산업 시장 규모는 5조 2,000억 원이었으며, 제제별 시장 비율은 백신이 4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31.7%, 혈액제제 8.7%, 혈장분획제제 7.9%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혈장분획제제 해외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5일 이내 긴급회의 소집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3대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7월 30일 밝혔다.

현재 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 23.), 위기대응네트워크(7. 24.), 노동권자문기구(7. 30.)가 모두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 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긴급회의가 열리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 내용에 공급망을 교란시킬 만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안전판을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7월 24일 열린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의장국에 올랐다.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에게서 높이 평가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국내총생산)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다.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이 참여 중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며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韓·日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에 가리비, 전복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와 전복 2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 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도는 어업자와 양식자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1644-4116) 또는 생산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해적 주의보 … 선원피해 75% 급증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하며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상선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8월 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해적에 의한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작년 상반기 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작년 동기 2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작년 상반기 대비 8% 증가한 4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던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이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이 발생해 피해지역이 넓어졌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 98명의 51%에 해당하는 50명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 4건 중 3건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선원 억류피해 등이 집중되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해상강도 행위가 집중되는 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올해 2분기 전국 무역항 물동량 전년 대비 3.2% ↑

‘컨’ 물동량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810만 TEU 처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높은 해상운임 등 항만물류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수출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 3억 2,159만 톤 대비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의 물동량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으로는 전년 동기 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각각 15.5%, 7.8% 증가한 점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 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U가 처리됐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 592만 TEU에 비해 5.3% 증가한 623만 TEU를 처리해 2분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 제재, 홍해사태에 따른 우회항로 전환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21.9%↓), 일본(4.4%↓) 등의 물동량은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8.6%↑), 미국(19.5%↑)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항 수출입은 글로벌 선사의 미국(26.2%↑), 중국(9.5%↑) 환적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 277만 TEU에 비해 1.8% 증가한 282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314만 TEU 대비 8.4% 증가한 341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 85만 TEU 대비 8.0% 증가한 92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은 중국(8.2%↑)과 베트남(7.7%↑) 대상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84만 TEU 대비 7.6% 증가한 90만 TEU가 처리됐으며, 환적은 전년 동기 8,000TEU 대비 56% 증가한 1만 3,000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44만 TEU 대비 12.9% 증가한 49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39만 TEU 대비 6.2% 증가한 41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4만 7,000 TEU 대비 69.5% 증가한 7만 9,000 TEU가 처리됐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중남미) 서비스 유치 및 연계 환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또한 총 2억 5,071만 톤으로, 전년 동기 2억 4,958만 톤 대비 0.5% 증가했으며,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구현 기자 |

작년 무역활동 기업 역대 최대 기록

무역활동 기업 26만 3,000개社, 신규진입 7만 개社, 퇴출(중단) 5만 8,000개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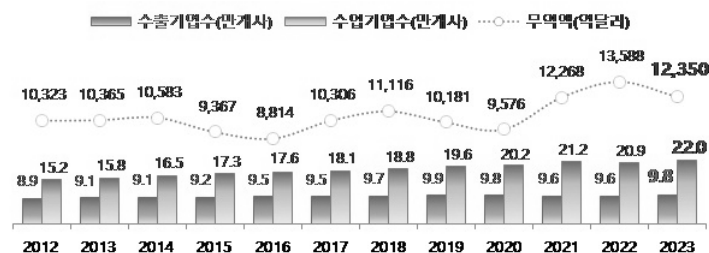
작년 수출입 무역기업이 증가하고 생존율 또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액은 감소했다.

관세청이 7월 30일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에 따르면, 2023년 수출입 무역활동 기업이 작년 대비 1만 2,175개社 증가한 26만 3,421개社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무역액은 1만 2,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8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2,175개社 증가했고, 수입 활동기업은 1만 737개社 증가했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 105개社로 전년 대비 1만 932개社 증가한 반면, 퇴출(중단) 기업수는 5만 7,930개社로 3,055개社 감소했다.

● 무역활동 기업 현황 ●



자료 : 관세청

작년 수출기업 1년 생존율은 49.1%(전년 대비 0.7%p↑)로 2021년 저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5년 생존율은 작년과 같은 16.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기업 1년 생존율은 49%(전년 대비 0.5%p↓), 5년 생존율은 19%(전년 대비 0.3%p↑)를 기록했다.

지역별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출의 경우 경남(46.0%), 수입은 경기(50.9%),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전남(16.8%), 수입은 경기(20.0%)였으며, ▲1년 생존율 최고 품목은 수출은 자동차(58.9%), 수입은 육류(58.7%),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조제사료(20.2%), 수입은 육류(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이상인 성장기업 수는 3,913개社(전년 대비 19.0%↑), 성장기업 중 진입 5년 이내인 신생기업을 나타내는 가젤기업 수는 1,290개社(11.9%↑)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공헌율을 보면 작년 수출은 지역별로는 경기도(20.5%)가,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되는 전기제품(27.1%), 유형별로는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선도기업(91.3%)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제품(27.1%), 자동차(14.5%), 기계·컴퓨터(11.5%) 순으로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3.2%)을 차지했다.

| 하구현 기자 |

‘브라질·아르헨·칠레’ 자원 부국서 공급망 유망지로 탈바꿈

남미와 파트너십으로 배터리 원료 다변화·공급망 안정성 추구

美·中 무역 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재 보유국들이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월 29일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는 배터리 핵심 광물 매장·생산량이 풍부해 전기차·배터리 산업 공급망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 세계 2위 흑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 망간, 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도 풍부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의 핵심 국가로, 각각 세계 1, 3위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한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며, 칠레는 세계 리튬 정·제련 2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의지가 강하다. 3개국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 광물 생산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 리튬, 텐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남미 3개국은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잠재력이 크지만 식수를 둘러싼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채굴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며 인력 수요는 늘지만 비공식 고용이 많은 등 리스크도 있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단순 사업성 평가 외에 광물 채굴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인력 및 에너지 조달, 지역주민과의 수익 공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서 첫 블렌딩 수출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HD현대오일뱅크)에서 블렌딩(혼합제조)돼 수출됐다. 7월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1월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수출은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세청은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선박 연료유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친환경 선박유를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를 선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 3차 참여기업 모집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와 그 밖에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社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韓·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주최,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韓·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이 7월 30일 공동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한 사우디 기업들이 참가하며 2022년 11월(서울)과 2023년 10월(리야드) 당시 체결했던 계약·양해각서(MOU)의 적시 이행과 추가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사우디의 의료 서비스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식품 기업이 대거 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사우디 마지드 빈 알카사비 상무부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관세청의 혁신 여정

2024 하반기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



이 종 욱 | 관세청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그간 우리 경제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고속 성장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불과 50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공적개발원조(ODA)의 주요 수혜국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제1호 국가가 됐으며, 30년간 183개국에 6조 6,000억을 지원하는 ODA 세계 15위 국가로 변모했다.

이러한 고속 성장은 높은 교육열을 통한 인재 양성, 세계 최고의 기업을 육성하려는 기업가 정신, 성장 친화적 제도·정책이 좋은 자양분이 된 결과였다. 고속 성장이 바탕이 돼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됐으며, 소득 불평등도 완화됐다. IMF는 고속 성장과 성공적 분배를 달성한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Asian Miracle)’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한국의 역동성이 고성장·분배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IMF, 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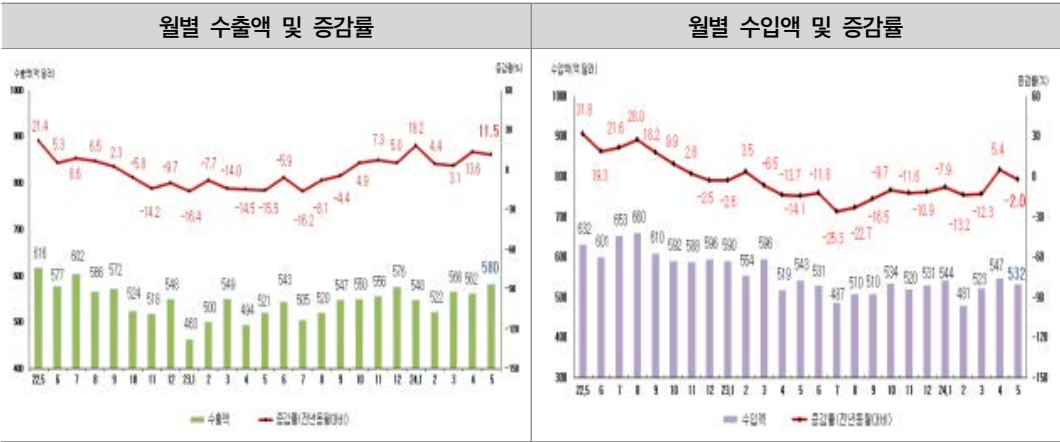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자원도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경공업 제품·잡제품 제조 및 수출을 시작으로 수입품 대체를 통해 수출입국으로 발전했다. 곧이어 기계·전자제품에다 중화학 공업을 확대 발전해 지금은 원전과 방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대국 지위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무역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의 ‘무역입국(貿易立國)’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금의 수출대국의 저변에는 관세청이 지속해 온 수출 지원 정책과 제도 혁신이 일부 기여를 했으리라 자부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990년대 7.8%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대 초반 수준까지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에는 1.4%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조금씩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상반기 수출을 견인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선박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아프리카 등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국제 공조가 첫 발을 내딛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4년 상반기(5월 누계)에는 반도체(53.0%)·승용차(5.3%)·석유제품(8.2%)·선박(109.7%)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한 58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수입은 국제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6.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관세청 월별 수출입동향).



※ 출처 : 관세청

2024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대한민국의 무역통상 환경 또한 다양한 내·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하락, 통화긴축 완화,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무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4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 달러, 무역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확산에 힘입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이 하반기에도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무역협회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 2024. 6. 24.).

● 2024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비 %)

구분	2023년(실적)			2024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액	3,070	3,252	6,322	3,345	3,556	6,900
(증가율)	(-12.4)	(-2.4)	(-7.5)	(9.0)	(9.4)	(9.1)
수입액	3,333	3,093	6,426	3,133	3,357	6,490
(증가율)	(-7.8)	(-16.4)	(-12.1)	(-6.0)	(8.5)	(1.0)
무역수지	-263	159	-104	212	199	410
무역규모	6,403	6,345	12,748	6,478	6,913	13,390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하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마약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 늘어났는데 특히 2023년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은 국내 제도가 어려운 만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관세청은 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 마약 총 적발량의 86%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하고 있다. 관세청이 7월 17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관세청은 日 평균 약 2건, 1.6kg의 마약밀수를 차단했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건수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는 국제우편(53%), 특송화물(24%)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반입 루트가 마약사범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마약밀수 단속 동향 ●

(단위 : 건, kg)

구분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괄	325	329	362	298	11	-10



2024년 상반기 기준(출처 : 관세청)

마약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품에는 총기류 등 안전위해물품, 국민건강유해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있다. 유해물품의 반입은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인해 적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관세청의 노력이 요구되며, 첨단산업 기술유출, 공급망 취약품목 등 신흥 무역안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유해물품 적발 동향 ●

안보위해물품(수량)	전략물자 단속(금액)	집중관리품목 검사적발(건수)
3,578개(2023.6) → 1만 3,855개(3배 ↑)	15억(2023.6) → 830억(54배 ↑)	1만 5,277(2023.6) → 1만 6,335억(7% ↑)

※ 집중관리품목 : ①수입요건 위반, ②원산지 및 품질표시 위반, ③지식재산권 위반, ④품목분류 및 세액표시 위반 등. 2024년 상반기 기준(출처 : 관세청)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듯 급박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국경단계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스마트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변혁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부터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를 ‘경제성장 지원’과 ‘사회안전’ 분야로 나눠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명해 보겠다.

첫째, 역동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산업 및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분야다.

관세청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허파를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사안임을 연초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성과는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해 수출하는 절차를 올해 1월에 신설해, 연간 부가가치 1조원의 석유 블렌딩 신산업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하반기 중에 실제 첫 수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X-Ray 영상정보와 무역데이터도 올해 안으로 확대 개방해 민간 AI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 대상물품 규정 및 보세운송 신고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화물차 대비 운송비를 17.6% 절감하고,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이다.

먼저 월별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기업의 경우, 1개월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수출물품 포장용품도 환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출자의 공급가액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7월 간이 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으로 관련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을 완화한 것도 주목할 규제개혁 사례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베트남과 체결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고 주요 통관분쟁국과의 관세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원재료로 해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던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미래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 수출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국경단계에서의 사회안전 분야 주요 추진 과제다.

여행자가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류 등을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올해 안에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우범여행자의 얼굴 특징을 분석해 동일 여행자를 찾아내는 AI CCTV도 올해 안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또한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품목별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 자체적인 유해의심품목 분석 수행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한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해 소액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과 수입요건 인증을 회피하는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플랫폼의 자정 노력도 촉진한다.

다음으로는 경제안보 및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이다.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 해외기술유출 등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한다. 무역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충격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대체수급선 발굴도 지원한다.

무역경제범죄 대응 강화로는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대행 조직, 환전소 등에 대한 불법외환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기업의 K-브랜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원산지세탁 단속을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품목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2024년 관세청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내용을 살펴봤다. 관세청은 작년 10월 관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선포했다.

글로벌 중추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관세행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관세청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스마트 혁신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와 '디지털 혁신 분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장 방문 및 관세행정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스마트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법치행정·투명성 확립을 위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전수 정비·통폐합으로 연간 4만 시간에 달하는 규정 검색시간을 단축시킨 성과는 관세청의 혁신 여정의 색채가 다른 기관과 왜 차별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스마트 혁신 노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는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장기 추진과제,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한·ASEAN FTA 수출자 신고란 작성 방법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1란(수출자 상호 등)에 수출자를 기재하고, 제11란(수출자 신고)에는 생산자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원산지증명서 제11란의 수출자 신고란에 생산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정보 및 서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상품요건을 충족했다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조가공에 대한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국의 수입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처음부터 받지는 못할 것이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한·ASEAN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체계

원산지증명의 방식은 크게 2가지인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방식을 합쳐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ASEAN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협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협정에서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실무적으로 ‘AK FORM’이라고 불리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ASEAN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한·ASEAN FTA는 매 선적 건마다 발급되고 영어로 작성되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통일서식)에 따라 A4 용지에 작성 및 발급돼야 한다.

한·ASEAN FTA는 기관발급 FTA 중 한·중 FTA와 함께 발급건수가 많은 협정이다. 2022년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은 총 16만 39건(세관 4만 2,443건, 상공회의소 12만 596건)으로 한·중 FTA의 발급실적인 총 21만 2,712건(세관 8만 565건, 상공회의소 13만 2,147건)에 이어 발급실적 2위의 협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AK FORM은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작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발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발급기관이란 한·ASEAN FTA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해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각 국가별 발급기관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캄보디아에서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ASEAN FTA에서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ASEAN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고, 해당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라오스의 경우 상공회의소(LNCCI,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발급기관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권한 있는 발급기관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라오스 측으로부터 “2012. 7. 1. 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ASEAN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통보받아 2021. 6. 7.에 공지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견본,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해당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해 ①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 및 서명되고, ②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며, ③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하고, ④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다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통일 증명서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돼야 한다. 만약 협정에서 정한 작성 방법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형식적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도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한·ASEAN FTA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명기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ASEAN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서는 AK FORM 서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서식에는 AK FORM의 구성 항목인 제1란부터 제13란까지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중 제1란에는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송하인,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을 작성하며, 제11란에는 ‘Declaration by the exporter(수출자 신고)’를 작성한다.

해당 란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는다.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한다.

3.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에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1란(수출자 상호 등)에는 상품의 수출자를 기재하고, 제11란(수출자 신고)에는 생산자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형식별 차이가 있으나 한·ASEAN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의 정보를 제1란에 작성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원산지증명서 작성란에 존재하지 않는 생산자의 정보가 제11란에 작성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2) 수출자 및 생산자

한·ASEAN FTA에서 수출자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이라 함은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밧 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면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생산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생산자와 수출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는 직접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에 개입하는 당사자가 된다. 각 협정별,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내역, 제조과정,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가격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수출자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의 서류제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대표적인 자료인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조자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권한이 있다면,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ASEAN FTA의 경우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산자의 서명이 원산지증명서에 작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3) 생산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없고, 제11란 또한 ‘Declaration by the exporter(수출자 신고)’라고 기재돼 있어, 언뜻 보면 생산자의 정보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서는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고 규정하고 있어 생산자의 서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원산지증명서 제11란의 수출자 신고란은 생산자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 또는 한·인도 CEPA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중 FTA에서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허용되고 제2란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13란(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신고)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지 생산자나 제조업자에 대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한·인도 CEPA는 협정상 제12란인 ‘Declaration by the exporter’에 대한 작성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중 FTA 제13란에 생산자 관련 정보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자유무역 협정집행기획담당관-784, 2016. 3. 25., 현재 폐지)’에 따르면, 한·중 원산지증명서 중국 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과 제13란(수출자 서명)에 실제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 대외무역사업자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C/O 제1란, 제13란은 실제수출자가 기재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실제수출자 외에 수출대행자(대외무역사업자 등)의 병기도 허용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 7. 14.)’ 이후 폐지된 지침이지만, 원칙적으로 C/O 제1란, 제13란은 실제 수출자가 기재돼

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한·인도 CEPA의 경우 한·ASEAN FTA 등 협정과는 달리 생산자 서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뤄지고 생산자의 서명으로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이에 대해 각 당사자 간 합의나 실무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생산자의 신고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RCEP의 경우 단순히 ‘Declaration by the exporter’란이 아니라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와 같이 표현돼 있고, 작성 방법은 제15란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가명 및 발급장소, 발급일자를 적은 후 서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생산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체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커스타드 타르트의 품목분류

커스타드 타르트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관세율표 제1905호에서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는 ‘베이커리 제품’을, 제1905.90-1030호에는 ‘페이스트리와 케이크’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커스타드 타르트로 ‘페이스트리’에 해당한다면 제1905.90-1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1905.90-1030호
품명	Pastry, frozen; 나타 에그타르트 초콜렛(Pastel de Nata Chocolate); 6001423
물품 설명	- 원형의 페이스트리(밀가루, 마가린, 소금 등) 안에 설탕, 난황, 밀가루, 분유, 전분 등을 혼합하여 채우고 그 위에 작은 초콜릿 조각들을 뿌린 것을 알루미늄 호일 컵에 넣고 구운 뒤 포장,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오븐에 가열 후 섭취)

FTA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B/L 1건에 대해 수출신고를 2개로 나눠서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도 각각 발급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하나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중 FTA 적용 시 B/L 1건에 원산지증명서 1개만 인정되나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합니다. 즉 수출신고를 각각 2건 했다면 원산지증명서 또한 2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에서 자세한 사항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서 정확히 안내 받기 바랍니다.

수입 / 해외거래처 부호 변경 신청

해외거래처의 상호가 변경됐다면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해외거래처부호는 ‘국가부호(2)+상호(6)+일련번호(4)+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거래처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 ① 제5조 제6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별지 제9호 서식의 위임장(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 제7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수출 / 임대수출의 수출신고 절차

**해외 회사와 장비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 회수 조건으로
장비를 보낼 때 수출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8호에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수출 관련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는 ‘33(소유권이전조건)’, ‘39(소유권불이전조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수출신고에 준하는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임대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작성 시 회사의 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및 그에 따른 해당코드와 임대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특수통관 / 특송물품 교환품 관련

**일본에서 물품을 직구하며 관세를 냈는데,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물품 반송 후 새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관세를 또 내야 하나요?**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교환인 경우에도 새로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수입신고 절차 등을 비롯해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다국적기업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 과세관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례

민정화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 기간 동안 ○○○○으로부터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상자(Carton)(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수입신고 □□□건(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위 수입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관세 등 ○○○원을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세법 시행령」(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목적의 평가)

- 2.(a) 수입된 상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사정되는 당해 수입된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 원산인 상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
- (b) ‘실제가격’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이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3. 당사자 주장 및 인정사실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수입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됐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 신고가격을 대체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사물품이 존재할 것,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을 것,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돼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것, 거래 단계·거래 수량·운송 거리·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피고는 가격 차이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항목 중 보험료 차이만 조정했을 뿐,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 수량 차이, 운송 형태 차이, 상표 차이 등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차이를 정량화해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피고가 적용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모두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봤으므로, 그 거래가격 전부를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과세가격과 수입거래가격을 비교해 저가 신고된 것들만 선별해 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고가 신고된 물품과 관련한 관세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나 형평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주 수입하고, ○○○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 항차 별 또는 주별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며, 수입통관 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2) 원고가 피고의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업무설명서(이하 ‘이 사건 업무설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원고와 ○○○의 거래가격 협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원고 소속 영업부에서 주별로 이 사건 물품의 국내 도매시장 가격 조사
- ② 원고는 희망 수입가격은 별도로 밝히지 않고 ○○○에게 이메일로 희망 구매물량 송부
- ③ ○○○이 원고에게 팩스로 가격제안서(Price Offer Sheet, 이하 ‘POS’라 한다) 송부
- ④ ○○○에서 제시한 가격이 원고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국내 시장가격에서 이윤을 포함한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원고 소속 마케팅 및 상품관리부에서 ○○○과 유선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이뤄지면 ○○○이 원고에게 수정된 가격을 기재한 POS를 팩스로 송부
- ⑤ 협상된 가격으로 선적 및 관련 서류 발송(B/L, C/O는 생산지 농장에서 발송하고, Invoice, Packing List는 ○○○에서 발송)
- ⑥ 원고 내부적으로 가격협상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월말 구두 보고

3) 한편, 원고는 가격협상을 통해 ○○○이 최초 제시한 거래가격을 인하하면서 POS를 다시 송부받은 거래가 2012. 1.부터 2013. 6.까지 14건 정도 존재한다면서 거래가격이 ○○○이 최초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정된 POS 14장을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했다.

4)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유사물품의 최저가 거래가격보다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더 낮은 이 사건 쟁점물품만 대상으로 유사물품의 최저가 거래가격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비율 표는 생략).

4. 판결 요지¹⁾ 및 검토 의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에 상고했으나 사건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됐다.

가. 판결 요지

1)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 사이의 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가능한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수입가격을 원고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내 도매시장가격을 참조해 원고의 영업이익, 내국물품과의 가격경쟁력 유지 등 특수관계인만 조정할 수 있는 요소까지 고려한 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제안했고, 원고는 가격협상 없이 ○○○이 제시한 거래가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러한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 점에 비춰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열대과일은 보관기한이 매우 짧은 관제로, 수출자는 수확 직후 곧바로 수출·선적할 수 있도록 이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수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입자로서도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시설투자 등을 위해 동일한 수출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이 수출자는 무조건 높은 거래가격을 주장하는 대신 수입국의 도매시장가격, 수입자의 가격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수입자의 성장 및 수출자의 수출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1) 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누68621호 판결

수 있는 적정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하고, 수입자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 특히 이 사건 물품은 필리핀에서 매주 선적이 이뤄지고, 원고와 〇〇〇은 위 물품에 대해 **주별 또는 항차별로 거래가격을 협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거래 및 가격결정 방식에 있어 판매자가 매번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구매자에게 제안하고, 구매자는 이를 가능한 낮추는 형식으로 거래가격의 결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매주 국내 도매시장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의 도매가격을 조사**하고, 매주 월요일 〇〇〇과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해 국내 시장 정보를 교환하며, 이에 기초해 〇〇〇의 거래가격 제안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보의 교환 등이 반드시 원고와 〇〇〇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유사물품의 최저가 거래가격보다 신고한 수입가격이 더 낮은 이 사건 쟁점물품만을 대상으로 유사물품의 최저가 거래가격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이 사건 물품 중 이 사건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바나나는 18.1%, 파인애플은 12.2%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품(바나나의 81.9%, 파인애플의 87.8%)은 **오히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〇〇〇은 원고와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적정 금액, 국내 도매시장가격, 원고의 시장 경쟁력,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가격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〇〇〇의 위와 같은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반드시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〇〇〇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단가와 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〇〇〇과 항차별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〇〇〇이 제기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〇〇〇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과 같은 열대과일의 수입가격은 수입국의 시장수요와 공급상황, 대체재의 가격 변동, 수출국의 과일 수확량 및 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중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그 가격 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나아가 원고가 〇〇〇으로부터 **최초 제시된 거래가격보다 인하된 거래가격이 기재된 POS를 받은 경우가 14건 정도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는 〇〇〇이 제시한 가격을 항상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무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 도매가격, 비용, 과일시장 동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〇〇〇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〇〇〇과 **유선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협상을 진행해 거래가격을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의 2012년과 2013년의 수입항차 회수가 341회나 됨에도 원고가 14건의 수정 POS 외에 가격협상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POS의 송부 및 거래가격의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는 이 사건 업무설명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의 거래관행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가격협상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에서 본 이 사건 물품의 거래 및 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거래가격 수정 제안이 14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신고 전까지 확정되면 되고, 반드시 선적 전에 확정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수확 직후 선적이 이뤄져야 하는 이 사건 물품의 특성과 가격결정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물품의 거래가격이 선적 이후에 결정된 것이 반드시 원고와 ○○○의 특수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업무설명서의 가격결정 방법 중에 ‘협상된 가격으로 선적 및 관련 서류 발송(B/L, C/O는 생산지 농장에서 발송하고, Invoice, Packing List는 ○○○에서 발송)’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협상된 가격으로 선적서류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물품선적 전에 가격협상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의 모든 거래가격이 반드시 위 업무설명서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거래당사자인 경우 동일한 시기에 수입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와 ○○○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차별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협상을 했다면 동일 물품에 대한 동일 항차의 수입단가가 동일해야 하는데, 원고가 ○○○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 중 동일 물품에 대한 동일 항차의 수입단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가 ○○○과 항차별 거래가격 협상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은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 피고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가 동일 항차임을 전제로, 동일한 입항일에 수입된 동일한 물품의 단가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거래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항차라 함은 출항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는, 입항일이 아닌 출항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동일한 선박을 통해 동일한 일자에 출항된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동일 항차임에도 단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 일부의 경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거나 세부적인 거래품명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설령 원고와 ○○○이 이 사건 물품의 항차별 가격을 실제로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 물품의 동일 항차별 가격을 달리 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수정 POS의 제목에**

‘□□주차 도착 바나나 및 파인애플에 대한 가격 제안(Price Offer for Week □□ Arrival Bananas and Pineapples)’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수입신고, 검역, 통관 및 출고 및 관련자료 등이 입항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편의상 POS에 예상 도착 주를 기입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격 협상에 있어 동일 항차의 기준이 입항일이라고 볼 수 없고, 가격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청구서(Invoice)의 ‘Vessel’란에는 출항하는 선박명과 출항일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 중 동일한 항차에 수입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 원고와 ○○○이 위 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협상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위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농산물 거래가격은 산지의 생산자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 기간인 ○○○○부터 ○○○○까지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이 제공한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가격(Farmgate Price) 내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공한 이 사건 물품의 필리핀에서의 생산자가격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거래가격은 그 편차가 크고, 변화가 심해 위 생산자가격 및 그 변동 추이와 상관관계가 없음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과 원고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 산지 생산자가격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나 수입가격은 그 외에도 가격책정 시점의 수입국의 시장수요 및 공급상황, 수출국의 과일 수확량 및 가격, 대체재의 가격 변동, 다른 수입국들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산지의 생산자가격이 상당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수입가격이 일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필리핀통계청에서 제공한 북 민다나오 지역 전체에서 생산되는 4개 품종의 바나나 생산자가격 평균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제공한 필리핀 바나나 생산자가격을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하고 있으나, 위 각 생산자가격에 원고의 수입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번디시(Cavendish) 품종의 바나나 가격정보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생산자가격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해당하는 개별 품종의 가격 편차와 농장별 가격 편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생산자가격과 원고의 수입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 사이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너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영업이익률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

매출원가(거래가격)를 왜곡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므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익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형성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월별 이익률 추이 및 선급금 지급내역 자료를 기초로 산정해 보면 ○○○그룹의 지주회사가 소재한 □□□나 ○○○이 소재한 △△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내에 소재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마진율)과 영업이익익률이 ○.○%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는 원고와 ○○○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마진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수입가격이 증가하면 관세의 부담 또한 증가하므로, △△ 등의 법인세율이 대한민국의 법인세율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그룹 전체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지주회사로 유출되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 ○○○으로 소득을 이전하려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이익익률과 세무조사의 상관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원고의 영업이익익률에 비춰 다국적기업인 ○○○과 원고가 조세부담의 절감, 소득의 이전, 그 밖에 여러 특수관계적 요소들을 고려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 ○○○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는데, 피고가 제출한 월별이익률 추이 및 선급금 지급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08년·2009년·2013년 상반기 영업이익익률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감사보고서에서 2007년·2008년과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영업이익익률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만 영업이익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할 별다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는 국내 도매시장가격이 일정하면 수입가격은 적어도 상승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2011. 7.부터 2017. 12.까지 바나나의 국내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원고의 수입가격이 상승한 것은 영업이익익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내 도매시장가격 역시 수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입가격 상승은 2011. 8.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된 할당관세(무관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할당관세(무관세)의 적용이 종료된 2011년 11월과 12월의 국내 도매가격이 하락세에 있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수입업자들의 수입가격은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원고의 수입가격만 상승했으나 원고의 영업이익익률이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2011년의 영업이익익률은 ○.○%인데 반해 2012년의 영업이익익률은 ○.○%로 편차가 있으므로,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원고의 수입가격이 반드시 원고의 영업이익익률을 유지해주기 위한 원고와 ○○○ 사이 특수관계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이 ○○○ 그룹의 전체적인 조세부담 감소, 원고의 소득 이전 및 이를 위한 영업이익익률 조정 등을 위해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수입업체들의 2011년 하반기 바나나 및 파인애플 수입단가가 일정하다거나 ○○○이 원고로부터 물품대금과 상계가 가능한 선급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수입업체들의 물품 수입 방법 및 가격결정 방법이 원고와 ○○○의 방법과 동일함에도 위 수입업체들의 2011년 하반기의 수입단가가 원고와 달리 일정하게 유지됐다거나 원고가 ○○○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특수관계를 전제로 지급됐고,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위 선급금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와 ○○○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검토 의견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판결 등 참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해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제1호)’,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제2호)’, ‘해당 물품의 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 제2호를 판매 주변상황 검토법이라 하는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관세청고시」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사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

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를 비교가격 방법이라 하는데, 구매자(납세자,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판매 주변상황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가격 방법에 의한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교가격 방법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홍콩이 가능한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수입가격을 원고에게 제안하는 대신 원고의 영업이익, 내국물품과의 가격경쟁력 유지 등 특수관계인만이 조정할 수 있는 요소까지 고려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제안했고, 원고가 가격협상 없이 ○○○홍콩이 제시한 가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점 등으로 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에 있다. 피고는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너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영업이익률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 매출원가(거래가격)를 왜곡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므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형성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원고와 ○○○홍콩의 거래가격 조정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 받은 가격이라 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신고한 수입가격이 더 낮은 이 사건 쟁점물품만 대상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4) 대상판례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독립적인 지위에서의 가격협상이 없었던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열대과일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매 건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무의하며, 그보다는 동일한 수출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물품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수입물품 중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신고한 수입가격이 더 낮은 것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바나나는 18.1%, 파인애플은 12.2%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품은 오히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홍콩은 원고와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적정 금액, 국내 도매시장가격, 원고의 시장경쟁력,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가격을 원고에게 제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그룹 지주회사나 ○○○홍콩이 소재한 나라의 법인세율 보다 높아, 원고가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입가격이 증가하면 관세의 부담 또한 증가하는 점, 영업이익률과 세무조사의 상관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만 영업이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5) 다국적기업 간 거래를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독립기업거래 간 거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옳다 또는 그르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독립 사업체처럼 모든 거래마다 치열한 협상을 거치지는 않을 것인 점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국적기업 간 거래는 무조건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납세자가 해당 물품 수입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임을 입증하고,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끼리만 거래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등 비교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입한 전체 수입물품 중에서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이 20% 미만이었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사물품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관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사물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래가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관청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고, 매 건 가격협상을 거치지 않은 점이 틀림 없고, 가격협상 없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거의 그대로 수락한 것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과세가격을 조사할 합리적인 의심의 사유이기는 하나, 거래가격을 배제할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원을 설득하기는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8401호[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non-irradiated)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해설 및 쟁점 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8401호의 물품은 크게 (I) 원자로, (II)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 기기, (III)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non-irradiated)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원자로(Nuclear Reactors) 그룹의 기기는 핵연료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들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 고압, 방사선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돼야 하므로 원자로 용기는 보통 탄소강합금재질로 만들며, 내부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돼 있다.

원자로의 대부분은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나 동위원소 생산용, 연구용(아임계 원자로 : subcritical reactor), 재료시험용, 핵분열성 물질로의 전환용 또는 증식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중성자의 연쇄반응 속도에 따라 저속로, 중속로, 고속로로 구별하기도 하며 핵연료의 종류와 작동원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가 연구개발·설계·제작된다.

(II)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 기기 그룹은 보통 중수(산화중수소)의 생산용이나 우라늄을 U235로 농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들이다. 이들 기기는 동위원소 중 특정한 하나의 원소를 화학적 원소나 화합물로 농축하거나 혼합 구성된 동위원소를 완전 분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든 기계적·열 관계적·전기적 기기를 포함한다.

(III)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non-irradiate) 원자로용 연료 요소(cartridge) 그룹의 기기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강 등의 비금속으로 만든 쉬이드(sheath) 안에 포함된 핵분열성(fissile) 이나 핵연료성(fertile) 물질로 돼 있다. 이들 기기(카트리지)는 취급의 편이를 위해 지지물, 헤드, 플랜지 등 특수 부착물이 부착돼 있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중수로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가압수로 원자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핵연료 다발,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용기, 원자로 가압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플루오르화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제8401호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제8421호 ‘원심분리기’가 경합이 되나 통칙 제3호 가목 규정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를 적용해 ‘동위원소 분리기’가 ‘원심분리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8401호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401.30 소호(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 요소)의 부분품은 소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칙 제6호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준용해 제8401.30 소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제8401.30 소호로 같이 분류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원자로,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터빈, 전기발전기,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열교환기는 제8419호, 증기발생기는 제8402호, 터빈은 제8406호, 전기발전기는 제8501호, 펌프는 제8413호 등으로 분류한다.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펌프 등이 하나의 모듈형태로 제작돼 제시되는 원자로의 경우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하거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401호로 분류한다.

원자로에서 냉각제 및 감속제로 사용되는 중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제2844호로 분류하며 중성자를 흡수해 핵반응 율을 조절하는 제어봉은 제8401호로 분류하지만, 제어봉의 제어제로 사용하는 봉소는 제2804호로 분류한다. 원자로의 주요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 니켈합금강, 탄소합금강은 제15부의 해당호로 분류하지만 이들 구조재를 이용한 원자로 용기는 제8401호로 분류한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8401호는 원자로에서 원료 및 감속재 등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리하고 농축하는 기기, 분리·농축된 원자로용 연료를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트리지(cartridge) 형태로 제조·조립하는 기기, 핵분열을 통해 핵연료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원자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제8401호의 물품은 크게 (Ⅰ) 원자로, (Ⅱ)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 기기, (Ⅲ) 방사선을 조사(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의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원자로(Nuclear Reactors) 그룹의 기기는 핵연료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들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 고압, 방사선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용기는 보통 탄소강합금재질로 만들며 내부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피복돼 있다.

이 그룹에서 원자로(nuclear reactor)란 핵분열을 제어된 상태로 일으키는 장치로 핵반응에 의한 핵분열 연쇄반응을 안전하게 제어·조절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용도, 핵연료, 핵분열제어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shield)과 차폐물에 의해 차단된 구역 내 모든 장치와 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차폐물의 내측에 포함돼 있는 장치와 기기가 차폐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장치와 기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4호 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이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이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SMR(소형모듈러원자로)는 일반적으로 상부헤드, 하부헤드, 몸통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적인 원자로로는 보통 다음 물품으로 구성된다.

- ① 노심부(core) : 핵분열을 일으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핵연료봉, 중성자의 반응속도를 줄여 핵분열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감속재와 냉각제(물, 중수 등), 중성자를 흡수해 핵분열의 속도를 줄여주는 제어봉으로 구성돼 있다.
- ② 기계적 구조물 : 노심부와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원자로 용기, 핵연료 요소(카트리지) 로딩용 격자, 냉각제 이송용 배관, 밸브, 제어봉의 조작기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③ 측정용·검사용이나 자동 제어용의 기기 :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 중성자, 전리선 등을 측정검사하거나 압력계나 유량계 등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부분으로 중성자원(neutron source), 전리함, 열전대(thermocouple), 망원사진기, 압력계나 유량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 ④ 열 차폐물(shields)이나 생물학적인 차폐물 :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방사선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부분으로 보통 탄소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콘크리트나 납으로 만든다.

원자로는 대부분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거나 동위원소 생산용, 연구용(아임계 원자로 : subcritical reactor), 재료시험용, 핵분열성 물질로의 전환 또는 증식용 등으로도 사용되며, 중성자의 연쇄반응 속도에 따라 저속로, 중속로, 고속로로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핵연료의 종류와 작동원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가 연구개발·설계·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에 다른 종류의 장치와 기기가 원자로 설비와 결합돼 사용되기도 하며,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shield)에 의해 차단되는 구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장치와 기기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 기기 그룹은 보통 중수(산화중수소)의 생산용이나 우라늄을 U235로 농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들이다. 이들 기기는 동위원소 중의 특정한 하나의 원소를 화학적 원소나 화합물로 농축하거나 혼합 구성된 동위원소를 완전 분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든 기계적·열 관계적·전기적 기기를 포함한다.

중수를 생산하는 기기들에는 중수를 농축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기기를 포함한다.

- ① 특수한 분별 분류(fractional distillation) 장치와 정류기기
- ② 액체수소의 저온 분류(fractional distillation)에 의해 중수소를 별도 분리하고 중수를 얻기 위해 연소시킬 수 있는 기기
- ③ 동위원소 교환 원리를 이용한(때로는 촉매제 존재 하에서) 중수나 중수소 화합물의 생산용 기기
- ④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중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전해전지와 생성된 수소와 생성되는 물 그 자체 사이의 동위원소교환과 함께 전기분해를 연결하는 기기

핵연료인 U235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에는 다음 기기가 포함된다.

- ① ‘가스(gas)(6플루오르화 우라늄)’ 원심분리기라 부르는 특수 원심분리기
- ②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기(기체확산형)
- ③ 가스(6플루오르화 우라늄과 헬륨이나 수소)의 분류를 고도로 만곡(incurve)된 노즐 속에 고속으로 주입시키는 기구인 ‘노즐(nozzle)’ 장치(Becker process)
- ④ 전자적 질량 분리식 방식의 동위원소 분리장치

(Ⅲ) 방사선을 조사(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그룹의 기기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강 등의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쉬이드(sheath) 안에 포함된 핵분열성(fissile)이나 핵연료성(fertile) 물질로 돼 있으며, 취급상 특수 부착물을 부착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핵분열성 연료 요소(fissile fuel element)란 금속이나 화합물(산화물·탄화물·질화물 등) 형태의 천연우라늄, 금속상태나 화합물로서의 우라늄235, 우라늄233이나 플루토늄으로 농축된 우라늄, 플루토늄으로 농축된 토륨을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이들 연료 요소는 원자로 주위에 갖다 놓으면 중성자가 약간 흡수된 후 핵분열성 물질이 된다.

이 그룹의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이들 형태는 기계적인 요소인 지지물, 헤드, 플랜지 등이 결합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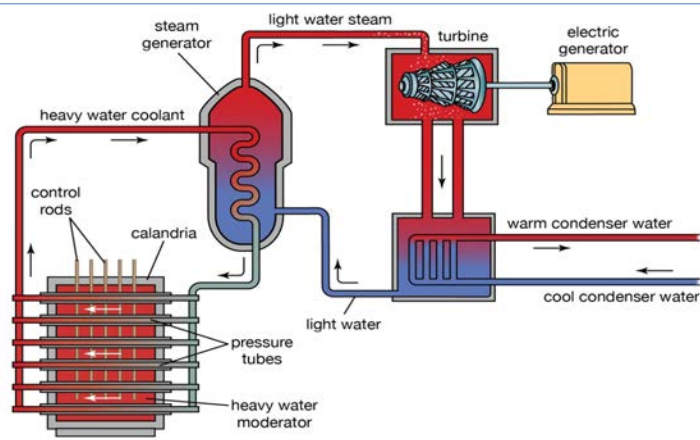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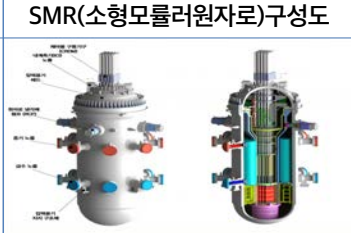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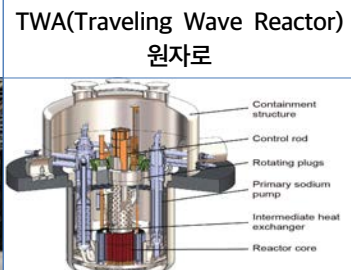
- ① 가연성의 금속이나 합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으로 피복된(sheathed) 봉(bar)이나 관(tube) 형태의 것
- ② 흑연으로 쌓은 봉·판이나 구 모양의 흑연으로 만든 핵분열연료 분산제나 분산제와 서멧(cermet)의 그 밖의 형태로 구성되는 핵분열연료 분산제
- ③ 불활성(inert)의 금속으로 외층이 피복(coated)된 핵분열성이나 연료핵 친원소로 구성되는 일종의 샌드위치 판 또는 우라늄의 이산화물이나 탄화물의 펠릿(pellet)을 충전한 불활성 금속으로 만든 관(tube)의 조립품

또한 이들 형태의 요소는 적당한 위치로 간격을 띄어서 맞게 하는 지지물이 고정돼 있으며 때때로 외부 케이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핵연료 요소를 구성하는 모든 보조 요소(sub-element)는 동일 베이스에 장착돼 있거나 동일 헤드에 부착돼 있다. 이들 보조 요소(sub-element)가 따로 분리돼 제시될 경우 이들은 핵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핵 연료 요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탄소나 탄화규소의 층으로 피복된 핵 연료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와 이미 사용한(방사선을 조사한 것) 핵 연료 요소는 제2844호[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로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핵연료 다발, 중수로 원자로,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용기, 원자로 가압기, 연구용 원자로 등이 있다.

□ 제8401호의 다양한 기기와 관련 물품



원자로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 구성도 	원자로 노심부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용기 	원자로 가압기(pressurizer) 위치 	SMR(소형모듈러원자로)구성도 
기능단위구조의 원자로 	SSR(Stable Salt Reactor) 원자로 	TWA(Traveling Wave Reactor) 원자로 
중식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용 원자로 

□ 제8401 소호의 구성

제8401 소호는 (Ⅰ), (Ⅱ), (Ⅲ) 그룹별 기기와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의미가 없다. 다만 제8401.30 소호[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의 부분품은 소호의 용어에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8401.30 소호에 같이 분류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Ⅲ. 주요 쟁점사항’에서 상세히 다룬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제8401.10호 - 원자로
제8401.20호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제8401.30호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제8401.40호 - 원자로의 부분품

□ 제8401호 HSK의 구성

소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세분화하지 않았다.

II. 관련 규정

제8401호의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통칙 제3호 가목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제16부 주 제4호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 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4호 관련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의 범주 해설

-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 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5호

-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 제16부 주 제2호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로 분류한다.

○ 제17부 주 제3호

-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 제2844호의 용어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 제84류 주 제2호(기능별분류체계 우선규정)

-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8419호의 용어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 제8421호의 용어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제8514호의 용어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제9027호의 용어

-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III. 주요 쟁점사항

제8401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제8401.20 소호)와 제8421호의 구분은?
- 2)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 요소의 부분품을 제8401.30 소호에 같이 분류하는 근거는?
- 3) 원자로와 다른 호로 분류되는 기기가 결합돼 제시될 때의 분류와 그 근거는?
- 4)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 5) 제8401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제8401.20 소호)와 제8421호의 구분은?

제8401호의 용어에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401호 해설서에 “동위원소 중의 하나의 원소를 화학적 원소나 화합물로 농축하거나 혼합 구성된 동위원소를 완전 분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든 기계적·열관계적·전기적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6플루오르화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예시하고 있다.

반면 제8421호의 용어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421호에 포함되는 기기로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분리하거나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이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물론 제8421호 해설서에는 원심력의 원리에 의해 조작되지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gas)’ 원심분리기라 부르는 특수 원심분리기(제8401호)”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확산기기(제8401호)”를 이 호에서 제외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에 근거해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가 원심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할지라도 제8421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401호로 분류함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목적상 해설서는 관세청장의 고시이므로 적용 통칙의 적정성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통칙 제3호 가목 규정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16부 주와 제84류의 주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 없고 호의 용어에도 “~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동위원소 분리기’가 ‘원심분리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6플루오르화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제8401호로 분류한다.

2)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요소의 부분품을 제8401.30 소호에 같이 분류하는 근거는?

제8401호 소호 체계는 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세분화했다.

제8401.10호 - 원자로
제8401.20호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제8401.30호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제8401.40호 - 원자로의 부분품

통칙 제6호(소호의 분류) 규정에 따라 제8401호의 부분품의 분류를 살펴보면, 원자로의 부분품은 제8401.40 소호로 분류하고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8401.20 소호로 분류함은 문제가 없다. 다만 제8401.30 소호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 요소의 부분품은 소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8401호 해설서에 핵 연료로 충전됐거나 봉합된 스테인리스 스틸 쉬이드(stainless steel sheath)와 같은 보조요소(sub-element)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카트리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호의 어디에도 연료요소(카트리지)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부분품인 스테인리스 스틸 쉬이드(stainless steel sheath) 분류를 설명하자면, 제16부 주 제2호 가목(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01호로 분류하고 통칙 제6호의 소호의 용어에 따라 소호의 분류는 불가능하지만, 통칙 제6호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이 준용되므로 제8401.30 소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제8401.30 소호로 분류하게 된다.

3) 원자로와 다른 호로 분류되는 기기가 결합돼 제시될 때의 분류와 그 근거는?

원자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원자로,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터빈, 전기발전기, 펌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의 ‘제8401호의 다양한 기기와 관련 물품’에서 ‘원자로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 구성도’ 참조).

이들 구성요소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열교환기는 제8419호, 증기발생기는 제8402호, 터빈은 제8406호, 전기발전기는 제8501호, 펌프는 제8413호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한 SMR(소형 모듈러 원자로), 4세대 증식로, 이와 유사한 원자로는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펌프 등이 하나의 모듈형태로 제작된다. 이 경우 각각의 기기가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하지 않고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하거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401호로 분류함이 바람직하다.

4)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원자로는 핵분열 반응을 원하는 속도로 안전하게 제어 조절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는 연료봉이 배치돼 있고 주위에는 감속제가 있는 노심부가 있다. 여기에서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노심 바깥으로 중성자 누설 장지를 위한 반사체가 있으며, 가장 바깥 측은 방사선 차폐를 위한 차폐체가 있다. 또한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냉각계통이 이들을 관통해 설치돼 있고, 중성자 흡수체로 만든 제어봉이 원자로 위쪽이나 아래쪽에 설치된다.

핵연료 물질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235는 제2844호로 분류하고 농축 우라늄을 카트리지

형태의 연료요소로 만든 것과 연료봉 다발은 제8401호로 분류한다.

냉각제 및 감속제로 사용되는 중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이 역시 제2844호로 분류한다. 다만 경수(일반적인 물)는 제2201호(물)로 분류한다.

중성자를 흡수해 핵반응 율을 조절하는 제어봉은 제8401호로 분류하지만 제어봉의 제어제로 사용하는 봉소는 제2804호로 분류한다.

원자로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고 핵분열 생성물이나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및 재료의 구조재가 사용된다. 원자로의 주요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 니켈합금강, 탄소합금강은 제15부의 해당 호로 분류하지만, 이들 구조재를 이용해 제작한 원자로 용기는 제8401호로 분류한다.

반사체(reflector)는 중성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속재와 같은 소재 즉 경수, 중수, 흑연 등이 주로 이용되며 이들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 다만 차폐체(shielding material)는 원자로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사선, 주로 감마선과 중성자선으로부터 인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층을 핵심으로 하고 주요 부분을 납이나 강철로 보강하는 경우가 많다. 차폐체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제8401호로 분류하지 않고 주요 재질에 따라 구조물(예 : 제6810호, 제7308호)로 분류한다.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규정을 적용한 원자로 용기에 대한 분류 사례 ●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2009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결정 세번	제8401.40-0000호
경합 세번	제7326.90-9000호, 제8401.40-0000호 ①, ③ : 제7326.90-9000호 ② : 제7304.59-0000호
품명	① RV Upper Shell / ② RV Lower Shell / ③ RV Transition Ring ; AP1000(원자로의 모델) ; ASME SA508 Grade 3 Class 1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가압 경수로 원자로(AP1000모델) 제작시 사용되는 철합금제 물품 3종
	○ 물품 외형 - Upper shell : 상부외경 4,775mm, 하부외경 4,476mm, 높이 3,721mm, 중량 110톤의 철강제 물품으로, 상부가 하부 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진 원통 형상이고, 내경은 부위별로 3937·3810·3960·4049mm 등으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횡단면이 균일한 상태는 아니며, 양쪽 끝 부분이 개방된 상태
	- Lower shell : 외경 4,476mm, 내경 4,049mm, 높이 4,387mm, 중량 99톤의 철강제 물품으로, 상하부가 균일한 원기둥 형상이며, 양쪽 끝부분이 개방된 상태
	- Transition Ring : 상부외경 4,476mm, 하부외경 3,286mm, 높이 1,431mm, 중량 23톤의 철강제 물품으로, 내외경이 하부로 갈수록 아치 형태처럼 좁아지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양쪽이 끝 부분이 개방된 상태

- 제조 공정 : 본건 물품 3종은 단조이후 황삭, 열처리, 정삭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물품임
- 철강 잉곳(용융해 제조) → 단조 → 황삭 → 열처리 → 정삭

○ 기능 및 용도

- 수입 이후 3가지 물품은 용접으로 접합돼,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의 용기 일부로 사용됨
- 원자로 용기로서의 기능
 - 핵분열 생성물 차폐와 같은 안전기능
 - 제어봉 구동장치 및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지지
 - 냉각제 유로 형성 및 유동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

○ 수입 이후 가공 공정

- Upper shell은 측면을 천공 후, 냉각수 통로용 노즐을 결합(용접)한 상태로, lower shell과 용접돼 원자로 용기의 일부를 구성
- Lower shell은 내부를 cladding(스테인레스 스틸)한 후, 상부에 upper shell, 하부에 transition ring과 용접돼 원자로 용기의 일부를 구성
- Transition ring은 하부에 lower head를 결합(용접)한 상태로, 상부에 lower shell과 용접돼 원자로 용기의 일부를 구성

○ 신청인의 추가 설명 내용

- 원자로 용기는 발전소 운전기간 중 핵분열로 인한 방사능 조사, 고온 및 고압에 노출되는 환경을 견디기 위해 소재 제작을 위한 특별한 요건(엄격한 화학조성, 샤르피테스트, RTndt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 본품은 원자로 용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으로만 사용되며, 특별한 소재 제작 요건을 필요로 하는 만큼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또한, AP1000(원자로 모델)의 용기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AP1000에 맞게 특별 주문·제작된 물품이고, 국제소재규격에 맞춰 설계·제작됐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해당 해설서는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본품은 원자로 용기의 일부에 해당하는 upper shell, lower shell, transition ring이 각각 분리돼 제시되는 것으로,

- 본품 중 upper shell의 경우 천공 후 노즐을 결합한 상태로 lower shell과 용접되나, 용접 부위에 있어서 세 부분은 추가 가공 없이 조립되는 것이며
- 조립(용접)되는 경우 원자로 용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326호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공정에 따라 제작된 철강 제품이 분류되나,

-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특게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이나 ‘좀 더 가공이 요구되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단조물’의 경우 해당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이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의 경우, 냉각제의 순환용 노즐 설치, 내부 부식 방지를 위한 cladding 등의 작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나

- 원자로의 핵반응에 따른 생성물(방사선 등) 차폐와 같은 안전기능
- 제어봉 구동장치 및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지지
- 냉각제 유로 형성 및 유동 제어를 위한 구조
- 냉각제 온도 변화에 의한 열 스트레스(thermal stress)를 견디는 것 등
- 원자로 용기로서의 기능은, 본품의 재료 특성이나 그 구조적인 형태상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제16부 주 제2호 나목(부분품의 분류)에 따라 원자로의 부분품(제8401.40-0000호)으로 분류함

5) 제8401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특히 원자료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은 제89류(선박)에 분류된다.

제89류의 물품은 특이하게 제17부 주 제3호(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규정)에 따라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박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9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중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 사용하는 항행 및 추진용 원자로는 제8401호로 분류한다.

제8514호의 용어에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을 규정하고 있고, “고온 야금법에 의하여 조사된 핵연료의 분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노(furnace)와 그 밖의 기기를 포함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용기기(예 : 방사성 찌꺼기를 함유한 진흙이나 유리의 연소용이나 흑연이나 방사성 필터의 연소용)나 재순환을 위해 재생된 핵분열성(fissile) 물질의 소결이나 열처리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와 표준수 간의 끓는점에 관한 아주 적은 차이점을 이용해 동위원소(중수)를 분리하는 특수한 분별 분류(fractional distillation) 장치와 정류기기는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이므로 제8401호로 분류한다.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재료의 질량분석기(mass spectrograph)와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공질(porous) 멤브레인(membrane) [‘베리어(barrier)’]를 통한 확산에 의해 시동 가스에 비교되는 우라늄235의 함량이 약간 다른 두 개의 분획물(fraction)로 분리시키는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기는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이므로 제8401호로 분류한다.

낙시의 미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지루한 취미로만 여겨졌던 낙시가 최근 TV 프로그램, 유튜브 등의 콘텐츠 발달과 함께 더 이상 ‘아저씨의 취미’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이제는 20~30대의 젊은 남녀가 낙시터를 데이트 코스로도 찾을 만큼 대중화됐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이자 체험형 취미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낙시용 미끼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정정 이유] 본 물품은 어류의 필레(fillet)를 조미액에 절여 소매 포장한 형태로 제 0511.91-2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소호 제0511.91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가 세분류되고 있다.

또한 제0511호 해설서에서는 (12)항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타수산물가 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무수 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의 경우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0.030g/kg 이상 남지 않아야 한다.

본 물품의 품목분류도 국내 「식품위생법」의 위와 같은 사항을 일부 수용해 식용과 비식용을 나누는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현품의 소매포장 형태 확인 시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표기하는 등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에 해당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해 제0511.91-9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ISH WASTE	0511.91-2000 (A 5%)	Dotted gizzard shad	0511.91-9000 (A 8%)

인공태양 발전 시대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는 자원이 한정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을 발생, 지구 환경오염 주범으로 비난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수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에는 희소한 편이지만, 우주의 75%를 차지하며 지구와 물속에 존재하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더구나 수소는 연소과정에서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100% 친환경 자원이라 할 수 있다.

1g의 수소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1,5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인 인공태양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인공태양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6월 19일 나주시, (사)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와 함께 도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라남도·나주시·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가 주축으로 체결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나주시, 협회와 함께 국가와 지역의 미래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전부터 인공태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기관 유치를 준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공태양은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로 기술될 것이고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에서는 핵융합에 따른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등을 얻기 위한 발전세트(Electric generating set)로 장착돼 제시된다면 제8502호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Electric generating sets and rotary converters)’에 분류될 것이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94호_2024.8.2.

최신개정법령

조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입법예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조약 제2581호, 2024.8.1.)

2024년 2월 6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대표간에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2024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을 이에 공포합니다.

(미국의 제안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시

대한민국

정 본부장 귀하,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 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캐서린 타이 대사

(한국 측 회답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캐서린 타이 대표 귀하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D.C.
미합중국

타이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2024년 3월 15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하 영문 생략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2024.7.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 제4항 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품명	규격
	번	호		
	호	소호		
1	8419	89	기타	냉각기(cooling plant and machinery)로서 양자컴퓨터용 소자를 영하 273도(℃) 이하로 냉각·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8419	89	기타	향온향습기(향온기, 향습기 및 향습배양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pm 3.0^{\circ}\text{C}$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pm 5\%$ 이하인 것 2. 사용 온도가 영상 100°C 이상이거나 영하 40°C 이하인 것 3.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8420	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진공 라미네이터(vacuum laminato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22	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1. 진공상태에서는 15초당 4.0헥토파스칼(Hpa) 이하, 가압상태에서는 1.0메가파스칼(Mpa) 이하의 압력을 기기의 상부와 하부에서 균등하게 기판에 가할 수 있는 것 2. 동시에 진공, 가압 및 가열하여 패키지 기판을 성형할 수 있는 것
	8479	89	기타	
4	8424	89	기타	현상·박리기(developer stripper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컨베이어로 기판이 이송되고, 이송된 기판에 약품이 분사되는 것 2. 현상기로서 인쇄회로기판(PCB) 위 감광성 레지스트의 비노광 부분을 현상액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 3. 박리기로서 인쇄회로기판(PCB) 위의 경화된 감광성 레지스트를 박리액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는 것
5	8456	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레이저발진기로서 레이저의 파장이 1,340나노미터(n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8456	90	기타	이온밀링기/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가속전압이 40킬로볼트(kV)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 총(ion gun)을 장착한 것
7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머시닝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研削) 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곡면 가공이 가능한 것
8	8458	11	수치제어식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lathe, 터닝센터(turning centre)를 포함한다]으로서 금속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금속의 표면을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8460	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	29	기타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8460	31	수치제어식	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 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mm) 이상 80밀리미터(mm) 이하인 것
	8460	39	기타	3. 제품의 바깥지름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축부(work stock)와 심압대(tail stock)간 거리가 500밀리미터(mm)이고, 주속도(週速度: 연마석의 회전속도)가 80미터/초(ms)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10	8460	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연마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	90	기타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한 사출방식인 것 2. 서보모터(servomotor)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마기로서 내부지름이 3밀리미터(mm)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11	8462	61	액압식 프레스	가압력이 3,250킬로뉴턴(kN) 이상 6,500킬로뉴턴(kN)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8477	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 튜브(inner tube) 성형기	자동 버핑 머신(auto buffing machine)으로서 타이어 접지부(tread)의 깊이에 따라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접지부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8479	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분쇄기(milling machine)로서 분쇄 시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가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8479	89	기타	전지용 극판 미세홀 가공기(battery electrode micro hole processing equipment)로서 리튬이온 전지용 전극에 4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미세홀을 형성시킬 수 있고 금형과 제어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5	8479	89	기타	5축 본딩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동시에 5축 이 움직이면서 스캔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드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8479	89	기타	알칼리 이온수 생성장치로서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 이상 13.2피에이치(pH) 이하인 알칼리 이온수 80리터(ℓ)를 연속하여 생성하고 내부펌프를 사용하여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7	8479	89	기타	압출기로서 필름 제조 시 스크루(screw)의 회전속도가 0.2알피엠(rpm) 이상 120알피엠(rpm) 이하이며, 속도를 0.1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8479	89	기타	코팅기(coating machine), 도금기(plat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3	30	전기도금용·전기 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비정질 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증발원을 탑재하고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 또는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19	8479	89	기타	자동노칭가공기계(automatic notching tool)로서 시료와 노치(notch)의 치수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를 정하여 시료를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8485	10	금속용	3차원프린터(3D printer)로서 14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선으로 원하는 회로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8514	19	기타	노(爐,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열압축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등의 실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3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전기로(電氣爐)로서 0도(℃) 이상 160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3. 열처리장치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의 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 4. 코터 오븐(coater oven)으로서 이차전지용 양극·음극의 활물질과 첨가제를 가열 및 건조하여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최종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22	8515	80	그 밖의 기기	접합부를 압착 또는 마찰하여 용접하는 금속용접기기로서 15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초음파 복합진동으로 금속을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3	8515	90	부분품	복합진동 초음파 용접기의 부분품으로서 진동 전달 소재와 홀더(holder)로 구성되어 있고, 10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진동을 금속소재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4	8543	70	그 밖의 기기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린(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8543	70	그 밖의 기기	신호발생기(DTV signal generator)로서 방송신호를 갈무리(capture)한 기기에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6	8543	70	그 밖의 기기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고주파 증폭기, 주파수변환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받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27	8543	70	그 밖의 기기	배터리 충전·방전 설비(battery testing system)로서 충전 시 정전류/정전압(CC/CV)과 방전 시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시험이나 방전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	8543	70	그 밖의 기기	결합 및 감결합 회로망의 양쪽 기능을 통합한 전기회로 장치로서 단말에 인가된 방해신호 외에 다른 방해신호가 단말기의 전원단에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9	8543	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극저온용 칩 홀더(cryogenic sample hold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저주파용 48채널과 고주파용 16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극저온에서 작동 가능하고 비자성체 물질로 구성된 것 3.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소자에 양자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30	8543	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극저온용 다채널 저주파 통과필터(compact low pass fil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무선주파수용 24채널과 저주파용 24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극저온에서 작동 가능하고 비자성체 물질로 구성된 것 3.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신호들에 대한 방해신호를 줄일 수 있는 것
31	8543	70	그 밖의 기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개발 보드로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로직 게이트(logic gate)의 배치와 연결을 임의로 설정하고 로직(logic)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2	9029	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용 계수기(counter)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9030	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저항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시료에 전자빔을 비춰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비접촉 방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34	9033	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온도기록장치로서 영하 10도(℃) 이상 영상 4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를 계측할 수 있고, 1와트(W) 단위로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고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 개정 이유 ◇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제8조 개정)
 -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서식 변경 반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7조의2·제8조 개정)
 -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파종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수출입안전 검사과-1243, 2024.5.10.)은 폐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com 참조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2, 2024. 7. 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32호(2024.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571	2024-23호('24.05.29.) 2024-32호('24.07.29.)	Frozen piddock meat	
580	2024-32호('24.07.29.)	Control Arm 등	
581	2024-32호('24.07.29.)	Ball Joint	
582	2024-32호('24.07.29.)	Bush	
583	2024-32호('24.07.29.)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584	2024-32호('24.07.29.)	인쇄용 금속잉크	
585	2024-32호('24.07.29.)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	

※ 이하 www.custra.com 참조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2, 2024. 7. 30.)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성(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6.62
	나. 이성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성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형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7.83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3. 그 밖의 공급자	7.12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별첨]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 별첨 : www.custra.com 참조

공고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3, 2024.8.2.)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4년 5월 3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석유수지(Petroleum Resin)

- 조사범위: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1)이나 디올레핀2)을 함유한 C53) 및 C94) 유분(溜分)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5)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6)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프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Ningbo Yonghua Resin Co., Ltd.,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 (대만)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Chuen Huah Chemical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4	044-203-5874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입법예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82, 2024.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사항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근거 규정신설(안 제3조의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규정을 정비(안 제43조의2)하여 재입법 예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및 디메틸에테르로 정함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으로 정함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유화연료유로 정함

라. 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 제4항·제5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분분석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규정 정비(안 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를 위한 바이오중유의 품목번호(HSK)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바이오중유 규정 삭제

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아.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차.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 신설(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제조 유종 및 수출입유종란 추가

4.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화 : 044-203-5221

- 팩스 : 044-203-4762

- 이메일 : ksoccer81@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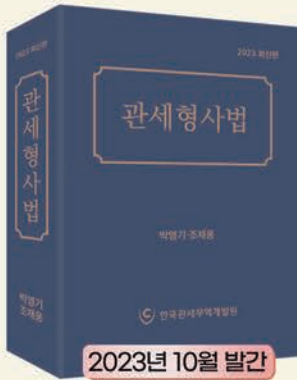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2023년 10월 발간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